문서번호	보건위생과-4623
결재일자	2016.3.1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★ ⊙

★주무관	식품위생팀장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		
이막래	윤상일	정주섭	03/18 김경희		
협조					

-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-

패스트푸드·대형뷔페 위생점검 사전계도 활동 계획

2016. 3.

성동구

(보 건 위 생 과)

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☑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☐ 공약(약속)사업 ☐ 계속사업 ☑ 인센티브/공모사업 ☐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● 구 민 : 유 ☐ ( ) 무 ☑ ● 전 문 가 : 유 ☐ ( ) 무 ☑ ● 이해당사자 : 유 ☑ (뷔페, 패스트푸드 운영 영업자) 무 ☐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☑ 환경영향 ☐ 안 전 ☐ 유지비용 ☐ 바른 공공언어 ☑ 성 인 지 ☐ 취약계층 ☐ 장 애 인 ☐ 디 자 인 ☐ 갈등발생 요인 ☐
타자원 활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☐ ( ) 무 ☐ ● 서 울 시 : 유 ☑ (서울시 식품안전과) 무 ☐ ● 기 업 : 유 ☐ ( ) 무 ☐ ● 민 간 단 체 : 유 ☑ (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) 무 ☐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☐ 보도자료 ☐ SDTV ☐ 성동뉴스레터 ☐ 성동구소식지 ☐ 기 고 문 ☐ 전자행정서비스 ☐ S N S ☐ 기타(리플릿 등) ☐ 없 음 ☑

● 홍 보 제 목 :

● 중점 홍보사항
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–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–

패스트푸드·대형뷔페 위생점검 사전계도 활동 계획

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정기적인 사전계도 활동을 통해 적발·처분보다는 계도 위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전환 필요로 위생점검 사전계도 · 홍보 활동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함.

Ⅰ 추진근거

❑ 식품위생법 제22조, 동법 시행규칙 제19조(출입, 검사, 수거 등)

❑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: 서울시 식품안전과-6842(2016.3.11.)

Ⅱ 실시개요

❑ 계도기간: 2016. 3. 21. ~ 3. 25.(기간내 2일간)

❑ 대상시설: 20개소(패스트푸드 10, 부페 10)

❑ 계 도 반: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(2인 1조)

❑ 계도방법: 위생점검 실시 1개월 전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 사전계도

❑ 활동사례금: 400천원(서울시 예산)

○ 산출내역: 4명×2일×50,000원(1일 5개소 이내)

○ 지급방법: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 감시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

Ⅲ 세부추진계획

❑ 계도 지역 및 반원

구분	1조	2조	비고
업 소 수	10개소	10개소	
지 역	마장동, 금호동, 성수동	행당동, 옥수동, 성수동	
계도반원	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	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	

❑ 주요 계도·홍보 사항

○ 위생점검 사전예고 안내 및 사전계도 안내문 배포

대상	위생점검 일시	점검자	비고
패스트푸드	2016. 4월 말	해당동 담당 공무원	
뷔페			

○ 기본안전수칙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체크리스트 안내

○ 기초위생관리 홍보물 배부

Ⅳ 행정사항

❑ 위생점검시 위법사항 적발: ‘위반확인서’ 징구, 행정 처분 예정

❑ 사전계도 활동일지: 방문기관 ‘확인자’ 란에 서명 받음

❑ 사전계도 실적 보고: ‘16. 4. 1.(서울시 식품안전과)

붙임 1. 대상업소 현황 1부.

2.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홍보자료 1부.

3.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자료 1부. 끝.